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11. 29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 : 『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사유	처분내용		
양*일	66.03.01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	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미출석 및 출석통지 2회 불응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이사	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56-22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2. 11.29. ~ 2022. 12.13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 하동고용센터 최선희(Tel. 055-880-55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